휴가지에서 교통사고시 대처요령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가지까지 이동수단으로 자가차량을 많이 이용하며, 여름 휴가철의 절정기인 7월말에서 8월초에는 거리에 각양각색의 자동차가 쏟아져 나온다. 특히 요즘은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어, 더욱더 여름휴가를 기다릴 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분 좋은 휴가길에는 운전자 혼자만의 안전이 아닌 가족 전체의 안전을 위해 안전 운전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왕좌왕 하기 보다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달에는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성되는데, 각각 입장에서의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인 경우

첫째,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확인하여,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해자는 사고 발생시 경찰 공무원에게 사고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셋째, 함부로 차를 절대 이동시키지 말고, 스프레이로 피해자 위치, 차량 파편 위치 등을 표시하고, 카메라로 여러 각도에서 현장촬영을 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상황을 즉시 통보한다.

넷째, 목격자를 확보하여 목격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메모하여 둔다.

다섯째, 어지럽혀진 현장을 정리하고 피해자 차량 등을 노변으로 옮긴다.

주의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대의 견인차량이 도착하는데 섣불리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며, 설령 견인시키더라도 견인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서 신고된 견인요금은 승용차의 경우 10km 견인시 5만1천6백원과 구난비용 1만6천원 등 6만6천6백원선이다.(날씨에 따라 20% 할증되기도 한다)

피해자일 경우

첫째, 피해자는 정확히 사고 상황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사고 현장의 보존을 위해 차량의 최종위치, 파손부위 등 확인, 스키드마크 확인, 가해자 음주여부, 무면허 인지 확인, 사고지점 지형이나 기상상태

등을 파악, 신호의 유무나 사고 충격 당시의 신호확인 등이 중요하다.

셋째, 사고 현장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촬영을 한다.

넷째, 목격자를 확보하는데 2~3인 이상의 목격자를 확보하여야 유리하다.

다섯째, 가해자의 신원확보가 중요한데, 면허증, 검사증, 보험권 등으로 일단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둔다.

여섯번째,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데,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일곱번째, 교통사고의 신고는 가해 운전자의 의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의 개입없이 사고를 처리하려고 손해배상을 약속하면서 경찰에 알리지 말 것을 부탁한다. 이때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청을 응한 후 가해자가 후에 태도를 바꿀 경우 현장보존불능 및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는 스스로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

주 의

가해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권 등을 제시 또는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행위가 현장에서의 사고 책임에 대한 시인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명확한 경우

첫째, 침착 · 신속하게 사황을 판단하여 냉정히 원인을 분석해보고,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제압한다.

둘째, 상대방에 주도권을 빼앗겨 과실이 있는 것 같이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이 이성을 잃고 거칠게 나온다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넷째,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만을 구별할 뿐,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과실비율이 1%라도 많은쪽에서 가해자가 된다.

다섯째, 양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양 보험사 직원이 과실비율을 정하여 처리한다.

알아야 할 사항

첫째, 최근 일부 렌트카 회사에서 일반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으로 대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으므로 차량대여시에는 반드시 번호판의 "허"자 확인이 필요하다.

등록된 렌트카는 대인,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무허가 렌트카는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인 81%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경우 그 외 사람(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변경될 보험제도에서는 대리 운전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리운전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운전자는 오너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장거리 운행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